

1994년도 충청북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예 산 결 산 특 별 위 원 회

목 차

1. 예산(안) 편성방침과 기준	477
2. 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	478
가. 예산(안) 총규모	478
나. 세입예산(안)	479
다. 세출예산(안)	481
3. 검토 의견	484

'94년도 충청북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 예산(안) 편성방침과 기준

기 본 방 침

- 중앙지원 사업비 정리
- 법정경비 및 투자사업비 계상

편 성 기 준

[세입예산]

- 중앙지원 기금 추가 내시분 계상
-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변경내시분 계상

[세출예산]

- 중앙 복구계획에 따른 수해복구사업비 계상
- 중앙지원 사업분에 대한 도비부담액 계상
-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조정 및 필수사업비 계상

2. 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

가. 예산(안) 총규모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액		증 감	
	금 액	%	금 액	%	금 액	%
합 계	744,701,576	100	731,622,203	100	13,079,373	1.7
일 반 회 계	527,065,019	70.8	514,520,521	70.3	12,544,498	2.4
특 별 회 계	217,636,557	29.2	217,101,682	29.7	534,875	0.2

'9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7,447억 157만 6천원으로서, 기정예산 7,316억 2,220만 3천원보다 1.7%인 130억 7,937만 3천원이 증액편성됨.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4%인 125억 4,449만 8천원이 증가한 5,270억 6,501만 9천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0.2%인 5억 3,487만 5천원이 증액된 2,176억 3,655만 7천원의 규모임.

나. 세입예산(안) 주요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액		증 감	
	금 액	%	금 액	%	금 액	%
합 계	744,701,576	100	731,622,203	100	13,079,373	1.7
일 반 회 계	527,065,019	70.8	514,520,527	70.3	13,544,492	2.6
· 지방세	116,496,000	22.1	116,496,000	22.6	-	-
· 세외수입	91,855,937	17.4	91,814,706	17.8	41,231	0.1
-경상적세외수입	6,042,829	1.1	6,042,829	1.2	-	-
-임시적세외수입	85,813,108	16.3	85,771,877	16.6	41,231	0.1
· 지방교부세	152,205,619	27.0	135,971,439	26.4	6,234,180	4.6
· 지방양여금	49,748,234	9.5	49,748,234	9.6	-	-
· 보조금	109,389,229	20.7	103,120,142	20.2	6,269,087	6.1
· 지방채	17,370,000	3.3	17,370,000	3.4	-	-
특 별 회 계	217,636,557	29.2	217,101,682	29.7	534,875	0.2
· 공기업계	196,484,994	26.4	196,484,994	26.9	-	-
· 특별회계						
-지역개발기금	56,981,008	7.7	56,981,008	7.8	-	-
-공영개발사업	139,503,986	18.7	139,503,986	19.1	-	-
· 기타특별회계	21,151,563	2.8	20,616,688	2.8	534,875	2.6
-의료보호기금	15,786,097	2.1	15,251,222	2.1	534,875	3.5
-대청호특별 대책지역환경 기초운영관리	1,891,289	0.3	1,891,289	0.3	-	-
-농어촌소득 개발기금	3,474,177	0.5	3,474,177	0.5	-	-

□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6%인 125억 4,449만 2천원이 증가한 5,270억 6,501만 9천원으로서,

- 자체재원인 세외수입은 4,123만 1천원이며,
-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보조금등은 125억 326만 7천원임.

□ 세입예산을 항목별로 검토해 보면,

·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918억 1,470만 6천원보다 0.1%인 4,123만 1천원이 증가한 918억 5,593만 7천원으로서,

-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521만 1천원
- 중앙지원기금 추가지원분 잡수입 3,602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음.

· 의존수입인 중앙지원재원으로는 기정예산액 2,888억 7,581만 5천원보다 4.2%인 125억 326만 7천원이 증가된 3,013억 7,908만 2천원으로서

- 지방교부세(지정교부세 20건) 62억 3,418만원
- 국고보조금 62억 6,908만 7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음.

□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 기정예산액보다 0.2%인 5억 3,487만 5천원이 증가한 2,176억 3,655만 7천원으로서, 공기업특별회계가 90.3%, 기타특별회계가 9.7%임.

· 이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 의료보호사업도비 부담금(일반회계 전입) 1억 697만 5천원
- 의료보호 국고보조금 4억 2,790만원등

5억 3,487만 5천원이 증액계상됨.

다. 세출예산(안) 주요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액		증 감	
	금 액	%	금 액	%	금 액	%
합 계	744,701,576	100	731,622,203	100	13,079,373	1.7
일 반 회 계	527,065,019	70.8	514,520,521	70.3	12,544,498	2.4
· 인 건 비	38,965,758	7.4	38,965,758	7.6	-	-
· 물 건 비	27,305,395	5.2	27,247,126	5.3	58,269	0.2
· 이 전 경 비	102,733,785	19.5	103,764,165	20.2	△1,030,380	1.0
· 자 본 지 출	337,479,875	64.0	324,099,896	63.0	13,379,979	4.1
· 용 자 및 지 출	5,011,500	1.0	5,011,500	1.0	-	-
· 보 전 재 원	1,705,378	0.3	1,705,378	0.3	-	-
· 내 부 거 래	9,115,950	1.7	9,016,562	1.8	99,388	1.1
· 예 비 비 및 기타	4,747,378	0.9	4,710,136	0.9	37,242	0.8
특 별 회 계	217,636,557	29.2	217,101,682	29.7	534,875	0.2
· 지역개발기금	56,981,008	7.7	56,981,008	7.8	-	-
· 공영개발사업	139,503,986	18.7	139,503,986	19.6	-	-
· 농어촌소득 개발기금	3,474,177	0.5	3,474,177	0.5	-	-
· 대청호특별 대책지역 환경기초시설 운영관	1,891,289	0.3	1,891,289	0.3	-	-
· 의료보호기금	15,786,097	2.1	15,251,222	2.1	534,875	3.5

□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5,145억 2,052만 1천원보다 2.4%인 125억 4,449만 8천원이 증액된 5,270,6,50105만 9천원 규모임.

□ 세출예산을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 인건비는 증감없음.
- 물건비는 기정예산보다 0.2%인 5,826만 9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국내여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등이 증액된 때문임.
- 이전경비는 기정예산보다 1.0%인 10억 3,038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보상금, 민간이전 자치단체이전등이 감액된 것임.
- 자본지출이 기정예산보다 4.1%인 133억 7,997만 9천원이 증액된 것은 시설비, 감리비, 민간자본보조, 자치단체 자본보조등이 증액된데 기인함.
- 용자 및 출자는 증감없음.
- 보전재원은 증감없음.
- 내부거래는 기정예산보다 1.1%인 9,938만 3천원이 증액된 것은 회계상호간 전출에 따른 것임.
- 예비비 및 기타는 기정예산보다 0.8%인 3,724만 2천원이 증액되었음.

□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보고드리면,

- 의회비	1,000만원
- 일반행정비	1억 8,022만 5천원
- 사회복지비	49억 8,580만 6천원
- 산업경제비	47억 6,237만 6천원
- 지역개발비	25억 6,857만 7천원
- 민방위비	27만 7천원
- 지원 및 기타경비	3,724만 2천원

이며,

□ 세출예산을 주요경비별로 보고드리면.

첫째, 법정 필수경비로는

- 충주호 화재로 인한 경비 8,000만원

둘째, 비도가 정하여진 특정재원 관련사업은

- 수해복구 추가지원에 따른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사업등

21억원

- 거택보호자 월동대책비, 보건의료원 신설등 국고보조사업

81억원

- 도 여성회관이전 신축을 위한 교부세 사업 20억원

- 사회복지기금 및 청소년 육성 기금사업등 4,000만원

-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 1억원

셋째, 투자사업비로는

- 군도정비, 쓰레기 종량제실시, 행정홍보장비구입등

2억 6,000만원

넷째, 경정재원으로는

- 기정예산에서 사업여건의 변동등으로 4억 4,000만원

□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을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 시군의료보호진료비 5억원

3. 검토의견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중앙각부처로부터 교부결정 내시된 국고보조금과 교부세등의 추가지원으로 수해복구를 비롯한 도정시책사업을 마무리하기위한 예산조정과 년내 확보가 불가피한 필수경비 부족분을 확보하기 위한 결산예산으로,

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7,316억 2,220만원보다 130억 7,937만원이 증가한 7,447억 157만원이며, 일반회계가 5,270억 6,501만원, 특별회계가 2,176억 3,655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음.

호우 수해복구비를 비롯한 국고보조사업비를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하여 추가경정예산 성립전에 집행한 것과 부족한 필수경비를 계상한 이번 추경예산(안)의 편성내용에 부당한 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예상되는 불용액을 현안사업에 계상한 것은 신축성 있는 예산운영으로 바람직하다고 볼수 있으나 아래표에서와 같이 감액건수와 금액이 과다한 것은 당초예산 편성시 정확한 소요판단으로 사업의 적정규모를 판단하였다면 여사한 예산감액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향후 보다 면밀한 검토와 계획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예산감액 내역>

(단위 : 백만원)

실 국 별	건수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공 보 관 실	1	26	51	25
지역경제국	8	2,288	3,523	1,235
중평출장소	5	392	533	141
보사환경국	7	14,687	16,441	1,754
가정복지국	10	2,669	2,918	249
농 정 국	2	2,582	2,848	266
건설도시국	1	8,361	8,661	300
계	34	31,005	34,975	3,970

※ 건수는 1,000만원이상 감액한 사업임.